

21세기를 향한 산림정책개혁방안추진

조남조(趙南照) 산림청장은 4월 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49회 식목일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산림정책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 이날 조남조청장이 보고한 주요산림정책개혁방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산림정책을 산과 나무만 보고 추진해오므로 산주와 산촌은 소외되었다. 따라서 산림을 경제적자원과 환경적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는 ①산림 ②산주 ③산촌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림(자원)은 목재생산과 다양한 산림환경기능을 유지 증진토록 하고,

—산주(사람)는 경쟁력 있는 임업경영주체로 육성하며,

—산촌(지역)은 고립낙후지에서 국민휴식공간과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하도록 적극 개발한다는 것이다.

○조남조 산림청장은 이같은 개혁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산림자원 환경대책으로 자원가치가 낮은 천연림은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맑은물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5대강유역의 산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공해가 심한 도시와 공단주변에는 공해방지림등 환경림조성을 확대하는 한편, 강원도 홍천

군일원 국유림에 다목적 산림경영시범단지 조성을 추진.

둘째, 임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를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임업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임업기계 훈련원을 산림경영자 전문대학으로 확대 개편 추진하는 한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영세사유림은 3천ha 규모의 협업조직을 육성하고 임도 및 임업기계화를 촉진하므로써 생산비 절감을 유도.

셋째, 목재자급을 향상을 위한 해외산림 개발과 육성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산촌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산림휴양지조성과 지역특산소득원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산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진입로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남조 청장은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산지이용체계 재편과 세제감면 및 저리금융지원, 그리고 국립공원,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수목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등 임업의 저수익성과 G.R에 대비한 자원축적과 산림환경기능증진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산림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존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육성되어야 하며, 산림을 가꾸는 것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100년대계의 사업이므로,
-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일관되

게 추진하되,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주와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목적 산림경영 모델(Forestopia)구상을 구체화 하여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임시국회 통과한 산림관계법 개정내용소개

산림청은 지난 3. 4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산림관계 법률개정내용을 소개하여 이해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관계법률중 이번 개정된 법률은 ①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②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③사방사업법등 3개 법률이라고 밝히고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야생조수의 종류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 당해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가공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조수보호 국제화추

세에 부응하게 되었으며,

- 현행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을 3년에서 총포소지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므로서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 하였고,

- 특히 수렵면허 및 조수포획허가를 받지 않은자가 조수를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할 때에는 6월이하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서 밀렵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적극적 조수보호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포획승인을 받은자라도 포획조수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 야생조수를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야생조수의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2.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공무원의 부족현상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면서 산림보호 직원 배치를 신청하여 자율적으로 산림보호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국에 216명(도유림 55, 시·군유림 156, 사유림 5)이 배치되어 있으며, 배치권한이 산림청장에게 있었으나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영림서장에게 배치권을 이양하고,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청원산림보호 직원의 배치를 청원할 것을 권장케

하므로써 자율적인 산림보호 체제를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3. 사방사업법

-일정규모이상의 사방사업 시행자는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벌채 또는 형질변경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를 따로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방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밤나무 우량 교잡종 육성성공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는 국내산 약밤나무와 일본에서 도입된 밤나무 우량품종을 인공 교잡하여 당분함량이 높고 속껍질이 잘 벗겨지는 우량 교잡종을 육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원 임목육종연구소 유실수과 안창영 연구관은 국내산 약밤나무 계통인 상면 1호를 교배모수로 하고 일본산 밤나무 우량품종인 축파(筑波)와 안근(岸根)을 화분수로 '81~'82년까지 인공 교배하여 '84년도에 시험 조림한 후 '93년도에 수확한 결과, 지금까지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 보다 당도가 높고 속껍질이 잘 벗겨지는 우량교잡종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임목육종연구소에서는 각도 산

림환경연구소에 이를 보내 채수포를 조성하여 1997년부터 일반 농가에 접목묘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 우량교잡종은 밤나무 흑벌에도 걸리지 않고 추위에 잘 견디며 전국적으로 재배할 수 있으며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가 적지라고 덧붙였다.

-밤나무 우량교잡종 육성 비교-

구 분	재배품종	교 잡 종	
		상면1×축파	상면1×안근
밤알무게(g)	15.0	15.4	16.2
당 도(%)	11.3	15.5	16.7
속껍질박피성	불량	양호	양호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밤생산량은 8~10만톤으로 이중 3만5천톤 수출로 1억\$

이상 외화수입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외 수요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우량산

품종이 공급될 경우 밤재배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임도 1,100km 신규시설추진

산림청은 올해 임도 1,100km를 신설하여 임목생산 및 산불진화와 산림병해충방제등 임업경영기반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마을과 마을간 연결 공로로써 농산촌부락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농산촌 인력감소와 계속되는 노임상승 등으로 임업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임도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 올해 신규로 535억원의 예산을 투입 1,100km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시설은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인력절감을 위한 산림경영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나 '93년말 현재까지 총 임도길이는 5,989km로 ha 당 임도 밀도는 0.93m에 불

과하여 임업선진국의 ha 당 임도 밀도 5~42m에 비하면 극히 빈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우선 1 단계로 '95~'96까지 4,911km의 임도시설을 확충하여 임도밀도를 ha 당 1.86m로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97~2001년까지 14,500km, 2002~2010년에는 29,5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총 연장 임도를 56,000km로 늘려 우리나라 산지여건상 적정밀도인 ha 당 10m가 되도록 하므로써 산림경영의 극대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임도밀도가 향상될 경우 산림경영의 경제적 이익은 임목생산비에서 26%, 운반비에서 33%등 평균 31%의 생산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즈음한 환경재료로서의 목재이용의 중요성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3월 21일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즈음하여, 목재이용이 산림의 파괴등으로 지구온난화등 환경을 악

화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는 바 목재는 타 산업재료보다 환경 우호적인 환경재료라는 사실을 밝히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에

너지 대체재로서 목재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산림의 육성과 인공조림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 3월 21일 발효되었음.

○이 협약에서는 화석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산림의 보전·관리를 촉구하고 있음.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0.027%였고, 최근에는 0.035%이나, 2,100년대는 0.0825%로 증가가 예상됨.

○목재 1m³은 0.25톤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목재 1m³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0.8톤이 흡수되고, 산소 0.6톤이 방출됨.

○철강 1m³ 제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탄소배출량은 5,320kg/m³, 알루미늄은 22,000kg/m³, 콘크리트는 120kg/m³이나, 인공건조 제재목 28kg/m³, 파티클보드 200kg/m³임.

○목재는 그 자체에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저장된 탄소량: 제재목 250kg/m³ 파티클보드 260kg/m³)하고 있음. 목재는 제조시 소비에너지의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더라도 인공건조 제재목의 경우 222kg/m³(=250-28), 파티클보드는 60kg/m³(=260-200)의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음.

따라서 목재는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제조 에너지 소비가 적은 환경

재료임.

○1m×1m크기의 창틀제조시 알루미늄은 목재 보다 에너지소비가 140배나 많으며, 이를 목재로 대체하면 99.8kg의 탄소방출량이 경감됨.

○수목의 탄소저장력은 나무의 성장량에 비례함. 산림의 형태별 연간 물질생산량은 천연의 활엽수극성림은 0톤/ha, 성림이 된 인공림은 16톤/ha으로 인공림이 천연림보다 월등히 높음.

○성장중에 있는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주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고 있으며 산림은 지구상의 육상식물이 저장하고 있는 전체 탄소량 약 6,500억톤의 90%를 저장하고 있음.

○임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흡수·저장할 수 있는 연간 탄소량은 1,388만톤으로 발전·산업·수송등 분야에서의 연간 총 탄소 배출량 7,800만톤의 약 17%에 해당된다고 함.

○따라서 산림의 생산성을 늘리고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임분을 그대로보존하는 것보다는, 벌채하여 이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갱신함과 더불어 잡목숙기, 간벌, 비료주기와 같은 육림작업을 활성화 시켜야 함.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연료에 대한 탄소세부과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도, 에너지 다소비 재료비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재료인 목재가 이들의 대체재료로 이용될수 있도록 국민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심어서 푸르게 가꾸어서 울창하게